

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(시비)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지역아동센터에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제고		
사업비 (당해년도)	5,703,309천원	(국비)	(시비)5,703,309천원
		기타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가족담당관	이은영 2133-5165	안경천 2133-5185	양미아 2133-5188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3,937,590	(x-) 5,703,309	(x-) 1,765,719	(x-) 44
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	(x-) 3,937,590	(x-) 5,003,309	(x-) 1,065,719	(x-) 27
자치단체자본보조	(x-) 0	(x-) 700,000	(x-) 700,000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	○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	= 368,0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	368,000,000원	
	○ 종사자 처우개선비	= 3,707,000천원
	3,707,000,000원	
	○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(미지원)	= 224,400천원
	224,400,000원	
	○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% 추가지원	= 367,440천원
	367,440,000원	
	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	= 165,669천원
	165,669,000원	
	○ 냉난방비 지원	= 170,800천원
	170,800,000원	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	= 700,000천원
	700,000,000원	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지역아동센터에 시비 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제고

□ 사업근거

- 아동복지법(제52조, 제59조)
-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시장방침(2013.5.29_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8.1 ~ 2018.12
- 지원대상 : 지역아동센터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(가족담당관)
- 추진방법 : 25개 자치구 예산 신청에 의한 재배정
- 사업의 주요내용 : 지역아동센터 행사비지원,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, 운영비보조(국비 미지원),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%추가지원,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, 공기청정기 대여지원,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 등

□ 추진경위

-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계		5,703,309	
사업계획수립	2018.01~2018.01		사업계획수립(시)
보조금집행	2018.01~2018.12	5,703,309	보조금집행(시 → 자치구 배정)
보조금집행정산	2018.12~2018.12		보조금집행정산(시설 → 자치구 → 시)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416개소/11,487명(예산 3,157,600천원)
2016년도	○ 422개소/11,380명(예산 3,141,840천원)
2017년도	○ 425개소/11,400명(예산 3,937,590천원)

향후 기대효과

- 지역아동센터에 시비 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제고